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군산시				
평가기관		(주)씨에이에스	평가 기간	2026.05.11 ~ 2026.06.05	평가 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 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6. 1. ~ 2026. 12
	추진개요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채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신규 구축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추진예산	102,650,562천원 (VAT 별도)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세외수입 압류관리	113,802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세외수입 압류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355,609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세외수입 수납관리
	세외수입 과오납관 리	12,173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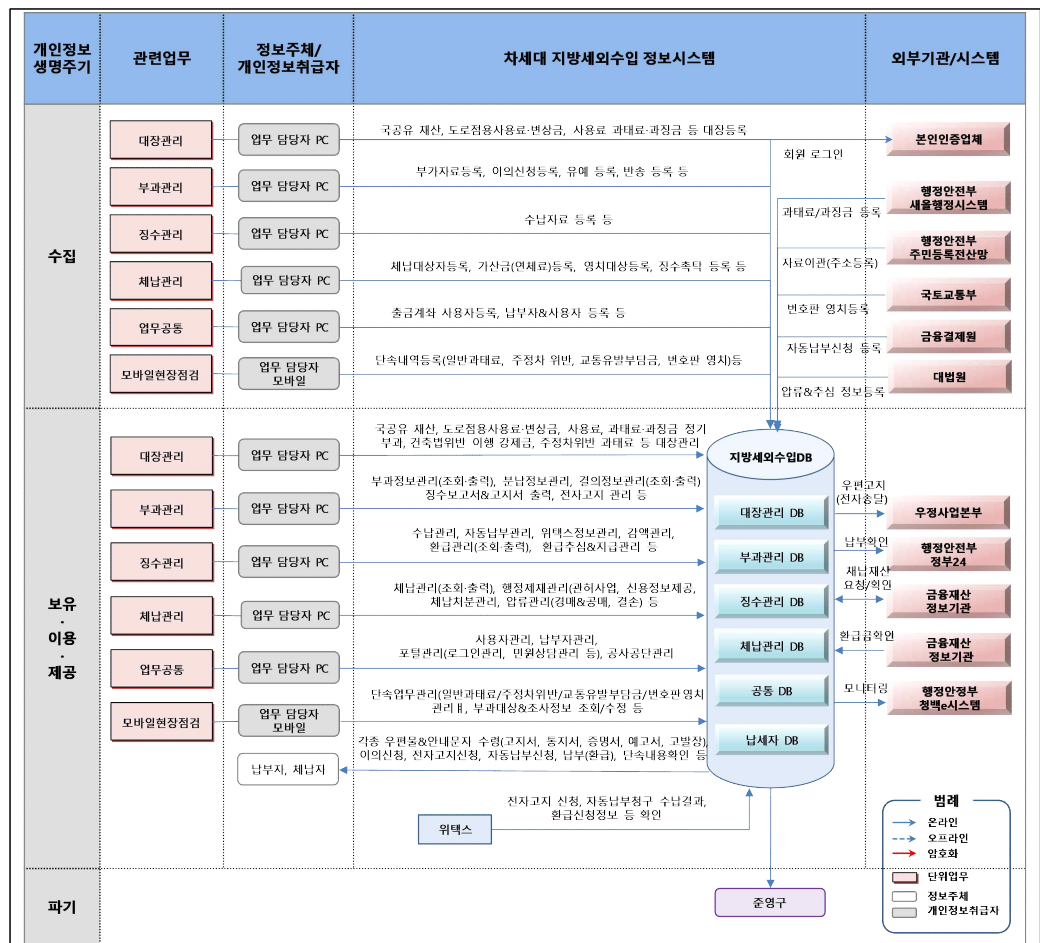
세외수입 결손관리	45,488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세외수입 결손관리
세외수입 감액관리	19,437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자산정보	세외수입 감액관리
세외수입 체납관리	192,982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 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389,893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 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범 죄경력자료	세외수입 부과관리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위해 국
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
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군산시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 조치 방안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선(1.2.1)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내용 추가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개선(1.4.1) : 양식 현행화 및 '동의 철회' 내용 추가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변경(3.2.1)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준영구'로 변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개선(3.3.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및 제공근거를 현행화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 재수탁자에 대한 내용 공개(3.4.1)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재수탁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개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7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2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5개 항목을 제외하고 22개의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